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5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9.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이원택)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의료 등)을 건축·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본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임.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지역 최초의 거주 공간으로서 2024년 말 또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임.

먼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를 추가하여 다른 개발 전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같이 사업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새만금개발공사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은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다음, 매립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지역의 특성상 스마트 수변도시의 초기 정주민은 교육·의료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원택의원 및 이

준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시행일을 수정하여 반영함.